

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,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					접수일자		관리번호														
특별징수의무자									①성명(법인명)							②주민(법인)등록번호						
									③상호(대표자)							④사업자등록번호						
									⑤주소(영업소)													
									⑥전화번호 (휴대전화:)							⑦전자우편주소						
⑧일련번호		⑨소득종류	⑩징수연월일	⑪납세의무자		⑭과세표준	⑮산출세액	⑯조정액 (환급액)	⑰납부액 (⑮-⑯)	비고												
				⑫성명	⑬주민등록번호																	
						합계																

작성방법

□ 인적사항(특별징수의무자)란

- ① 성명(법인명): 개인은 성명,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.
- ② 주민(법인)등록번호: 개인은 주민등록번호, 법인은 법인등록번호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.
- ③ 상호(대표자): 개인사업자는 상호명,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명을 적습니다.
- ④ 사업자등록번호: 「소득세법」, 「법인세법」, 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,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.
- ⑤ 주소(영업소):
 - 개인: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,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.
 -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: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,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. 다만,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.
- ⑥ 전화번호: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(휴대전화)번호를 적습니다.
- ⑦ 전자우편주소: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(E-mail 주소)를 적습니다.

□ 특별징수 명세

- ⑨ 소득종류: 「소득세법」 또는 「법인세법」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종류[이자소득, 배당소득, 사업소득, 근로소득, 연금소득, 기타소득, 퇴직소득, 저축해지추징세액 등, 「소득세법」 제119조(양도소득)에 대한 원천징수, 「법인세법」 제73조 및 제98조에 따른 원천징수 및 가감세액(조정액)]을 적습니다.
- ⑪ 납세의무자: 해당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적습니다.
- ⑭ 과세표준: 「소득세법」 또는 「법인세법」에 따라 원천징수세액
- ⑯ 조정액(환급액): 연말정산등 환급액

□ 문의사항은 시(군·구) 과(☎ -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